

의안번호	제 1009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3월 7일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09
----------	------

발의연월일 : 2022년 3월 7일

발 의 자 : 이상욱, 박형용, 이숙애,
이의영, 장선배, 허창원,
이상식

1. 제안이유

- 지원대상 범위를 현행 갱생보호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이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현행)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 (개정) 충청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안 제2조)
 - (현행) 갱생보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 (개정) 갱생보호 대상자,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및 위탁 규정 (안 제5조) 등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2022. 3. 10. ~ 2022. 3. 15
- 다. 협의 : 복지정책과
- 라. 비용추계 : 첨부제외 사유서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충청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 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중 “대상자 등의” 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도민의 의무)” 를 “(도민의 협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상자 등이” 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로, “노력” 을 “협력” 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자 등의 사회복지귀를” 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직업교육” 을 “직업훈련·교육”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3.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대상자 등의 사회복지를” 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중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로 한다.

제7조 중 “대상자 등의” 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로,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을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로, “위하여 노력한다.” 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u>	<u>충청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u>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u>의 범죄예방과 <u>충북도민의 복지증진</u>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보호관찰 대</u> <u>상자 등의</u> ----- ----- -----.</p>
<p>제2조(적용범위) “<u>저소득 법무보호 복지 대상자 등</u>”(이하 “<u>대상자 등</u>”이라 한다)이란 「<u>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u>」 제3조제3항에 따른 <u>갱생보호대상자 중 충청북도</u>에 주소를 둔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보호관찰 대상자 등</u>”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u>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u>」 제3조에 따른 <u>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u>를 말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u>도지사</u>”라고 한다)는 <u>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u>하여야 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 ----- <u>보호관찰</u> <u>대상자 등의</u>----- ----- -----.</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도민의 의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도민의 협력) -----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 ----- 협력-----.</p>
<p>제5조(사업)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직업교육 사업</p> <p><신 설></p> <p>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지 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신 설></p>	<p>제5조(사업) 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지정착을----- -----.</p> <p>1. (현행과 같음)</p> <p>2. 직업훈련·교육 ---</p> <p>3.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p> <p>4.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지정착을 -----</p> <p>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6조(보조)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보조) ----- -----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 지사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 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 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p>	<p>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 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 ----- 국 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 -----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8조(포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충청 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 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 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 다.</p>

관계법령 발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 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4항제1호

○ 첨부제외 사유

- 제정조례안 제5조 각호에 따라 도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사업 지원 관련 재정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으나,
- 동 조항은 권고적 형식의 임의규정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이 불비한 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